

복수전공시행세칙

제정 2007. 3. 1

개정 2008. 1. 1

개정 2011.11. 1

개정 2014. 9. 1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을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수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복수전공이라 함은 입학한 학과(부)의 전공(이하 제1전공) 이외의 다른 전공(이하 제2전공)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캠퍼스 내 또는 캠퍼스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.

②‘캠퍼스 내 복수전공’이라 함은 본교의 동일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수전공을 의미하며 제1전공을 수료한 후 제2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. (개정 2014.9.1)

③‘캠퍼스 간 복수전공’이라 함은 본교의 다른 캠퍼스에서 이수하는 복수전공을 의미하며 제1전공을 수료한 후 제2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수강범위) 복수전공을 원하는 자는 본교의 모든 대학 전 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예과 및 의학과, 보건의료계열, 사범계 관련학과는 제외한다.

제4조(신청제한) ①복수전공을 취득하려는 자는 복수전공 신청 직전학기까지 제1전공에서 취득한 평균평점이 3.0(B) 이상인 자여야 한다.

②해당 학장은 복수전공학과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학과 별로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신청절차) 복수전공 이수희망자는 신청 직전학기 기말고사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1전공과 제2전공의 학과(부)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학장의 허가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.

제6조(납입금 및 수강신청) 캠퍼스 간 복수전공자 또는 캠퍼스 내 복수전공자로서 졸업유보 이후의 복수전공자는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제2전공학과의 정해진 납입금을 납입하고 절차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납입금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.

제7조(이수기간) 제1전공을 수료한 후 제2전공의 이수를 승인 받은 자의 수업연한은 제2전공학과의 등록을 필한 후부터 2학기 이상으로 하며, 제1전공 및 제2전공의 통산 이수 학기는 1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재학 중 휴학기간은 이수학기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8조(학점이수) ①복수전공 이수자는 제2전공에서 지정한 전공과목을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 (개정 2008.3.1)

②제1전공과 제2전공에서 전공과목이 동일하며 B학점 이상의 과목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최대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③제1전공을 수료한 후 제2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학칙 제29조의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에도 불구하고 3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④부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학과의 부전공과목을 복수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부전공 자격은 소멸된다. (개정 2011.11.1)

제9조(학위수여) ①복수전공 지원자에게는 제1전공 학위를 유보하며,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 되었을 때 제1전공 학사학위와 복수전공(제2전공) 학사학위를 같이 수여한다.

②제1전공 수료 후 제2전공을 중도탈락하거나 포기하는 자는 해당 학기에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